

## 2023년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금 지원 사업 공고

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,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개발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진행중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3년 5월 23일  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### 1 사업개요

○ (사업목적) 지역특화산업\*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고,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,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고,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(BaaS) 연계 또는 기술 고도화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

\* 지역특화산업 : 제조, 물류, 바이오헬스, 환경, 에너지, 게임, 관광, 콘텐츠 등

○ (지원규모) 7개사(기업당 5천만원)

○ (사업기간) 협약일 ~ 23. 11. 30.(목)

○ (지원내용) 블록체인 기술/서비스 개발을 위해 발생하는 자금 지원

○ (지원대상)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사업화 모델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인천 기업 또는 인천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

※ 단,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,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전 완료해야하며, 사업자등록증 및 사무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

### 2 세부 지원 내용

○ (모집분야) 인천시 지역특화산업\* 분야

\* 지역특화산업 : 제조, 물류, 바이오헬스, 환경, 에너지, 게임, 관광, 콘텐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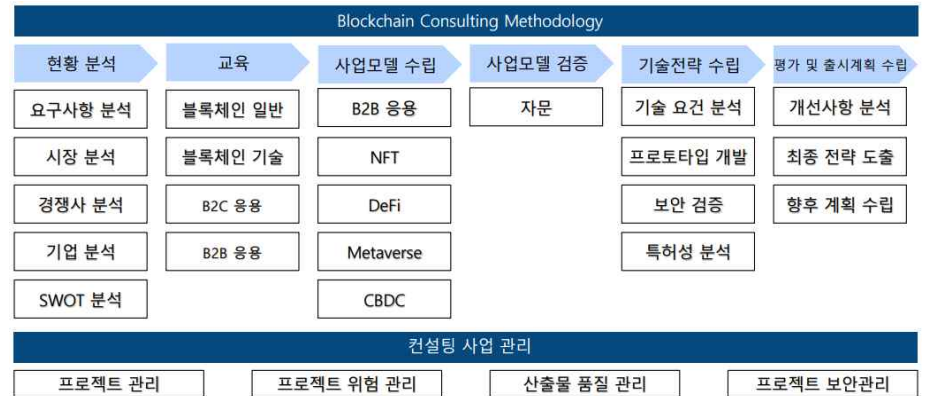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내용) 블록체인 기술/서비스 개발을 위해 발생하는 자금 지원

- 지원기업별 사업비 5천만원 지원(단, 아래 항목 2가지 중 1가지는 필수 반영)

① 국내·외 블록체인 전문기업\*의 **블록체인 플랫폼(BaaS) 사용** 지원

\* 국내·외 블록체인 전문기업 : 바이낸스, 람다256, 위메이드, 삼성SDS, 파라마테(아이콘루프), SK C&C, LG CNC, KT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업

② 국내·외 **블록체인 전문기업의 기술고도화 컨설팅** 지원



※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의 경우, 참여기업이 원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- 위의 지원내용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(예시 : 참여인력 인건비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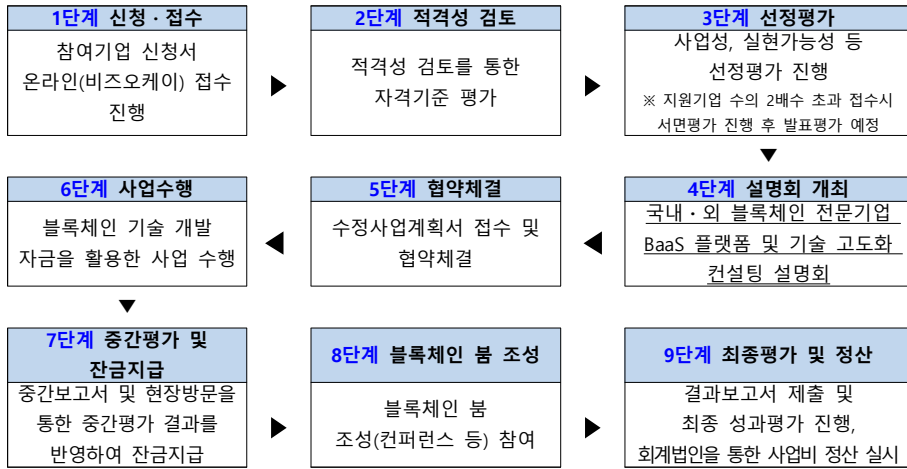
○ (필수 공통비용) 사업비 구성시 필수로 책정해야 하는 비용

- 지원내용의 2가지 중 최소 1개(필수)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  
- 위탁회계정산수수료

※ 필수 공통비용 금액의 경우, 제안사에서 수행계획서에 제시

○ (지급방식) 사업비는 착수시 선금을 지급하고,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예정

○ (세부 운영방법)



○ (세부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)

- (1단계\_신청·접수) 붙임 양식 작성 후 비즈오케이에서 접수
- (2단계\_적격성 검토) 제출서류 확인 후 적격성 검토 추진
- (3단계\_선정평가)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초과 접수시 서면평가 진행 후 발표평가가 진행되면, 2배수 미달시 서면/발표평가 통합하여 평가 진행
- (4단계\_설명회 개최) 국내·외 블록체인 전문기업 초청을 통해 BaaS 플랫폼 및 기술 고도화 컨설팅 설명회 개최
  - ※ 설명회에 소개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아니더라도, 참여기업이 원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BaaS플랫폼 및 기술 고도화 컨설팅 추진은 가능하나 선정기업의 경우, **설명회 참석 필수**
- (5단계\_협약체결) 설명회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후 협약체결
- (6단계\_사업수행)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수행
- (7단계\_중간평가 및 잔금지급)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
- (8단계\_블록체인 붐 조성) 블록체인 붐 조성을 위해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 개소식(23.8월 예정),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컨퍼런스(23.10.30.~31.) 등 행사가 개최 될 예정이며, 선정기업은 블록체인 붐 조성에 참여 권장
- (9단계\_최종평가 및 정산)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진행하고,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실시

3 조건 및 사업목표

○ (지원기업 조건)

-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사업화 모델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인천 기업 또는 인천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
  - ※ 단,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,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전 완료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 및 사무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
  - ※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나, 주관기업의 경우 인천 기업 또는 인천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이어야 함

○ (필수 사업 목표)

- 국내·외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(BaaS)사용 또는 기술 고도화 컨설팅 중 최소 1가지 필수
- 사업 제안서상 명시한 사업 목표

3 주요일정 및 선정기준

○ (주요일정)

참여기업 공고 및 접수	선정평가 (서면/발표)	사업설명회 개최	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	중간평가 및 블록체인 붐 조성	최종평가 및 정산
5.23.~6.19.	6.21(서면)/6.23(발표) 6.22(통합평가)	~6.28	7.1.~11.30.	협약기간 내	12월 초

※ 상기 일정은 접수 결과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ex.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 등)

○ (평가절차)

- 제안서 및 첨부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여부, 제안요건 충족여부를 사업담당자가 사전 검토
-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(서면/발표)평가를 통한 종합평가점수로 평가
  - ※ 선정기업 2배수 초과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서면평가 추진
  - ※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(발생)될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
○ (선정기준)

- 평가위원(5인 이상)의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와 정량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

○ (평가개요)

- 발표평가 : 14개사 내외(2배수)
- 발표시간 : 총 20분 PT발표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
- 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평가항목으로 구성
-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

○ (평가항목)

평가항목 및 배점		세부평가내용	배점
사업계획	목적 부합성	•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-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적절성 -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- 사업 수행 목표와 적절성	10
	지역특화산업 적합성	• 제안한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결합 가능성 및 적합성	5
	지원 필요성	• 제품 및 서비스의 현재 진행상황, 애로 사항, 시급성 등 지원의 필요성	15
	사업 준비정도	• 제품 및 서비스의 구현정도 • 목표시장 및 시장진출을 위한 준비성	10
	예산의 적절성	• 사업 추진 및 관련 지침에 맞춘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	5
사업수행 및 실현가능성	사업 수행능력	•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• 조직, 참여인력 구성 및 전문성 •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보유역량 등	15
	계획 적정성	• 제안하는 사업내용을 위하여 블록체인 전문기업 BaaS 플랫폼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추진목표,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	5
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	•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• 과제 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가능성	15
기술성	기술성	• 제안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우수성 - 대체 가능성,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	15
기대효과	성과파급성	• 사업완료 이후 기대효과 및 상용화 계획의 수행 가능성 - 시장진입, 매출성장, 신규인력 채용, 사업 확산 가능성 등 - 사업 성과 분석,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안	5
합 계			100

4 세부 추진절차

지원절차	추진일정(안)	추진내용
지원사업 모집공고	'23.5.23.(화)	• 블록체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중인 기업 대상 지원사업(기술 개발 자금지원 사업) 모집 공고
↓		
신청서 접수	'23.5.23.(화) ~ '23.6.19.(월)	• 신청서 접수 및 기업별 신청서류 확인
↓		
적격성검토	'23.6.20.(화)	• 신청기업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실시 - 채납여부, 미제출서류 확인 등
↓		
서면평가 (해당사)	'23.6.21.(수)	•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기반으로 서면평가 -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초과시 서면평가개최
↓		
대면평가	'23.6.23.(금)	•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기반으로 최종평가 - 전문위원(5~7인) 구성하여 대면평가 진행 ※ 지원기업 2배수 이내의 경우, 서면/대면평가 함께 진행 ※ 선정평가(서면/대면)의 경우, 지원기업 수에 따라 2배수 미달시 6.22.(목) 서면/대면 통합평가 개최 예정
↓		
설명회 개최	~'23.6.28(수) 이내 예정	• 국내·외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BaaS 플랫폼 및 기술 고도화 컨설팅 설명회
↓		
수정계획서 접수 및 협약	~'23.6.30.(금)	• 선정결과통보(종합평가의견 포함) •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제출서류 일체 재검토 • 전담기관(인천테크노파크)과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
↓		
사업추진 및 중간평가	'23.7.1.(토) ~ '23.11.30.(목)	• 사업비 지급 및 집행 • 과제수행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- 사업비 집행을 점검 및 중간성과 모니터링
↓		
블록체인 붐 조성 참여	사업기간	• 블록체인 붐 조성(컨퍼런스 등) 행사 참여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 등 참여
↓		
결과보고	~'23.11.30.(목)	• 사업결과보고서 제출
↓		
정산서류 제출 및 결과평가	'23.12월 중	• 사업비 회계정산 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서류 기반 최종수행 결과평가

## 5 신청 및 문의처

- (신청기간) 2023. 5. 23.(화) ~ 2023. 6. 19.(월)
- (접수방법) 온라인 접수 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  -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  - ※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,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
  - ※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권장
- (문의처) 인천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

구분	담당자	연락처	메일주소
사업 관련 내용	블록체인센터 손창우 책임연구원	032-714-9851	scw89@itp.or.kr

### ○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내용	비고
1	참여신청서	별첨 1 양식 활용	필수
2	수행계획서	별첨 2 양식 활용	필수
3	발표자료	자유양식	필수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별첨 3 양식 활용 ※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	필수
5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별첨 4 양식 활용	필수
6	사업자등록증	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필수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	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 증명서	필수
8	4대 보험가입자명부 1부	모집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 확인용	필수
9	기술/특허 등 보유기술 증빙서류	보유기술/특허/출원/인증/MOU/실적 등 증빙서류	해당시

## 5 유의사항

- (일반사항)
 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
  - 제출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  - 필수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및 위·변조 등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- 선정·협약 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참여포기 시 타 관련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

### ○ (관련규정)
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 준용
-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
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
-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
-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

### ○ (신청제외)

-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, 사업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
-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·허가·등록 또는 지정취소, 휴폐업, 체납여부 확인, 업무정지, 부정당 업체 (1년 이내)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-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이 불건전 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 등을 모방 하거나 도용한 경우
- 본 사업의 지원 분야,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
### ○ (사업비 환수)

- 성과목표 미달성시 또는 협약사항 중 사업비 환수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